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 - 101호

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년 6월 4일
재정경제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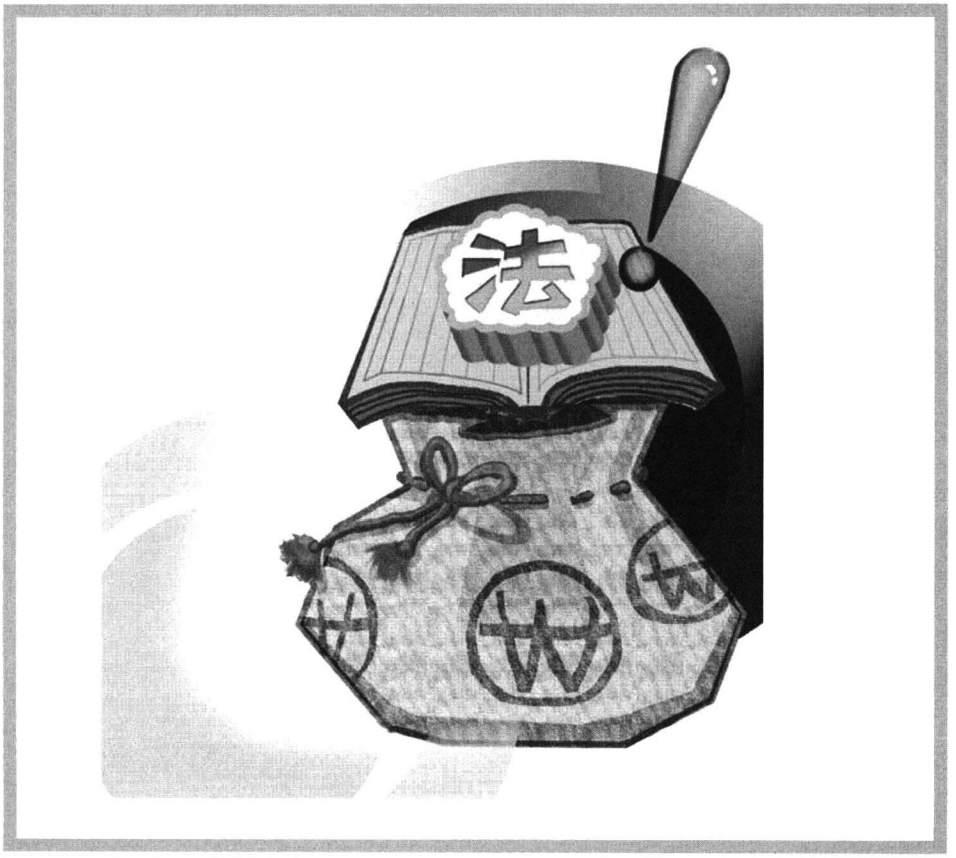

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취지

휘발유 : 경유 : 석유가스 중 부탄간 상대가격비율을 100 : 85 : 50으로 조정하기 위한 에너지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최근 6개월('06.11~'07.4) 평균가격 기준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50%로 맞추기 위해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306원에서 킬로그램당 275원으로 인하함

3. 의견제출

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A4종)를 재정경제부장관(참조 : 소비세제과장, 전화번호 : 2150-9243, 팩스 : 503-9226, e-mail : choijk46@mofe.go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기타 참고사항

특별소비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

2007. 5.

재정경제부

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고 수송용 유류간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2007년 7월까지 휘발유 대비 경유 및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각각 85퍼센트와 50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의 교통·에너지·환경세율을 인상하고 석유가스 중 부탄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「교통·에너지·환경세

법」 및 「특별소비세법」이 개정(법률 제7576호 및 제7575호, 2005. 7. 8. 공포 · 시행)된 바,

최근 6개월 평균('06.11~'07.4월)가격 기준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50퍼센트에 맞추기 위해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대통령령 제 호

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8호중 "킬로그램당 306원"을 "킬로그램당 275원"으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.

③(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